

제 464 호

1974. 7.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대 씨  
편집 : 문화정보실장 김 전 씨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례

◎ 조례

제 867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 ..... 3

◎ 규칙

제 1301 호 서울특별시세마율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치시행규칙 ..... 3

제 1382 호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에 면제 및 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6

제 1383 호 서울특별시방나무에 대한 농지세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시행규칙 ..... 9

◎ 고시

제 97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결정 및 지적승인 ..... 12

제 98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경구장) 결정 및 지적승인 ..... 12

제 99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 13

제 100 호 비로판매영업통지 ..... 13

제 101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및 지적승인 ..... 14

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일부 변경승인 .....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32 호	일단의주택자 조정사업 완료공고	15
제 13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 산지정업체 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15
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사 완료공사	16
제 138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17
제 139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17
제 1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141 호	환경예정지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26
제 14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경예정지 지정 일부 변경공고	27
제 143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일자변경 시행공고	27
제 144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흐적·병사용·구청장직인개작공고	28
제 146 호	준용화천(단축및 삭제)변경	28
건설부공고 제 73 호 : 김포 및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일부변경공고		29
마포구청공고 제 20 호 : 학교시설용지에 관한 개설 신청공고		30
◎ 사 명		31

**조 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67 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 20조제 6항 및 제 8항중 "첨부  
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사  
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81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마을공동(총  
유)재산"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처분  
의 권능이 마을공동체 (비영인) 자체  
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의 권능은  
마을공동체 각 구성원에 속하는  
공동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제 3조 (면제신청)** ①조례제 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를 받  
고자 하는자는 면지제 1호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부등  
본 또는 자동차등록증부등본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  
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  
내에 조사 결정하고 면지제 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4.7.29.

별지제 1호서식

##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 면제 신청서

## 0·0 구 청 장 귀 하

소 재 지	새마을 재산				
총 유 물	건 물	구 조	면적	전 평	용도
	토 지	지 목	지적	지적	용도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용도
	기 타				
면 세 법 고 내 자 용	세 목	년 도	기 분	신청 이유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시세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0·0 새마을

주 소:

성 명:

(4)

제 454호 시 보 1974.7.29. 40-

별지 제 2 호 서식

세마을 공동사업에 따른 시세 면제 통지서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시세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봉지합니다.

소재지	세마을 체산				
물	건물	구조		건형	용도
	토지	지목		지적	용도
	차량	차명		등록번호	용도
	기타				
연 내 세 목	년도	기분	세액	비고	
세율					
결정 이유					
년 월 일					
00 구청장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82 호

####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내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용어의 정의 ) ① "주택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회운임주취득자"라 함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원래의 원시 취득자로서 최초로 입주한 자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과 원시취득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과 건축주를 말한다.

제 3조 ( 경감신청등 ) ①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54 호 시 보 1974.7.29. 40-7

별지 제 1 호서식

##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경감) 신청서

000 구청장 규하

구 역 명 칭					
전 물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물 구 조			전 평		용 도
준 공	년 월 일			준공번호	
면 제 (경 감)	세 육			기 분	.
면 제 (경 감) 사 유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물금일  
과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

40-8 제 454 호

1974. 7. 29.

별지 제 2 호서식

시 세 면 제(경감) 통 지 서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  
면제(경감)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1. 구 역 명 칠

1. 건 물 소재 지

1. 구조, 전형, 용도

조 증 평

1. 세목, 납기, 세액

세 년도 기분 원

1. 결 정 사 유

년 월 일

0 0 구 정 장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83 호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  
제에 관한 특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면제신청 ) ① 조례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면지제 1호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면지제 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0-10 제 454 호

시 보

1974.7.29.

별지 제 1 호 서식

##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면제 신청서

## 00 구청장 귀하

경작자 주소			
경작자 성명			
밤나무 소재지			
경작 면적		주 소	
수령			
수확량			
수입금액			
소득금액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농지세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 별지 제 2 호 서식

## 농지 세 편 세 면 제 통 계 서

주 소

성 명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농지 세 면 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발나무 소재자	
주 수	
수 령	
수 확 량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소 득 율	
세 액	년 기분 월
결정 이유	

년 월 일

구 청장

## 고 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7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비:면전소)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면전  
소)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 (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5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전기공급설비 (면전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11-5번지 부근	2,05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8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정구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정구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34 호

{73. 11. 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5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사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운동장(정구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48 의 1 필지	756평 (2,495)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9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사무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서

사설명	위치	면적	비고
광운전자공대(학교)	서울특별시도봉구월계동 447-1부근일대	37,950평 (11,500평)	

※ 첨첨: 도단교시와 같음(도연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 호

비로판매영업등록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영업등록을  
하였기 비로판매영업등록법 제 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4. 7. 16.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주소, 성명 및 판매장소 제지	비료명칭	보증성분량	기타규격
1-3	등록 1974.7.16	1.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가리봉동 2-40 길: 대보 2. 판매장소 서울특별시도봉구가리봉동 2-40 길: 대보 3. 유통기간 자: 1974.7.16 지: 1977.7.15	제 5종복합 비료(액체) 일명: 푸살 가리: 3%	질소: 4% 이상 인산: 4% カリ: 3%	미량 요소 각 종

40-14 제 454 호

시 보

1974. 7. 29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1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34 호(73.)

가. 시설변경조서(운동장)

i 1. 5)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제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9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장	영등포구 오류동 106 일대	38,837	25,510	64,347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일부 변경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가. 지적변경조서

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제 11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제인에게 보입니다.

1974. 7. 2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대로	1	14	35	3,125	사천교	신도면 내리 (창로 24)	일부구간 공사시 공선에 맞추어 지적 변경
변경	"	1	14	35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서대문구청에 보관함.

공 고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2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0 호 ( 69.12  
26 )로 실시 계획인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완  
료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46 조제 3 항  
과 동법 제 85 조 제 1 항 및 건설  
부고시 제 123 호 ( 73. 4. 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 및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1.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사 완료 개 요 •

1. 사업집행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동산 10-19 의 14 평

2. 사업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3. 준공 면적: 14,782 평 ( ㎡ )
4. 사업시행자: 배한주택공사 사장  
최주중
5. 사업기간: 1969. 6. 16-74. 2. 26
6. 준공년월일: 1974. 5. 14.
7. 준공 도면: 벌침 ( 도면생략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정  
지정업체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당시 중소기업수출증 생산지정업체의  
기업체명,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사항  
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 생산지  
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및 대체지정 공고합니다.

1974. 7. .

서 울 특 별 시 장

10-16

시 보 1974. 7. 29

## 1. 번 경 지 정

번 경 지 정					번 경 후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329	주일산업 (주)	동래 문구면 목동 9-65-3	배종만	가늘설 액 범	329	서우물산 (주)	동래 문구면 목동 9-65-3	배종만	가늘설 액 범
448	신성기업 사	성동구 자양 동 328-1	정연태	혜 타	448	성신실업 사	성동구 성수 2가 63-5	정연태	혜 타
1118	선린실업 (주)	판암구 대방 동 58-21	이시점	차 수 공예품	1118	판암구 대방 (주)	동 58-21	김종례	차 수 공예품

## 2. 대 체 지 정

지 경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450	공예전기 제작소	성동구 구의 동 29-3	이현우	다이오 드	450	공예전기 제작소	성동구 구의 동 29-3	황운봉	다이오드
541	신창산업 사	성북경농동 283-23	박기경	혜 타	541	신창통상 (주)	성북경농동 383-23	박기경	혜 타
1504	한성공예 산업사	영등포내발 산동 53-6	김정오	나진화기 진유제품	1504	한영공예 산업(주)	영등포내발 산동 53-6	황근오	나진화기 진유제품

## ◎ 서울특별시 공고 135호

도시계획사업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사 원로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 호 (73.1.4)로  
시, 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이 다음과 같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46조 제 3  
항과 제 85조 제 1 항,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 (73.4.4)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시흥군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5

##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장 행지 : 경기도시흥군 과천면 주입리 산 13-1 일대
- 사업 명 : 도시계획사업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사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4-5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사장 유재홍
- 면적 : 92,400m<sup>2</sup>
- 사업시행기간 : 1973.2.12-74.4.10
- 준공 도면 : 현침 (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8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통로의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 16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 내용

가. 수취가자

종로구 종로 6가 289 의 3 동대문

중합시장(주) 대표이사 정시봉  
나. 시설목적 : 지하통로 (도로)

다. 구간 :

지하철동대문점류장~동대문중합

시장간

라.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지하통로 1,178m

마. 공사의 차수와 준공년월일

차공년월일 : 74. 3. 1

준공년월일 : 74. 7. 30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9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통로의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 16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 내용

가. 수취가자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의 69

대왕상가(주) 대표이사 김호진  
나. 시설목적 : 통로 (도로) 및 상가

다. 구간 :

지하철 청량리 청류장~대왕상가간

라.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지하통로 620m

상 가 275m

제 895m

마. 공사의 차수와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74. 3. 1

준공예정일 : 74. 7. 30

40-18 제 454 호

시 보

1974. 7. 29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0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 (66.12.

17)로 고시된 당시 도봉구우이동  
지내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  
람에 공한다.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 건설행정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

## 서울특별시 장

##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도봉구 수유동 성문

2. 사업의 종류: 우이동 지내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폭원 25미터  
연장 2,280미터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4. 6. . ~ 7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법정토지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법정조사

## 토지조사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사 (수용대상)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도봉구 수유동				279 ~ 273	대	10	수유동 279-16	이·원·상	
2					279 ~ 272	"	12	산 1	우태용	
3					279 ~ 271	"	11	부산시대신동 3가 79	김정곤	
4					279 ~ 270	"	44	동선동 1가 84-2	황재홍	
5					279 ~ 269	"	13	수유동 345-2	김경원	
6					279 ~ 268	"	5	동소문동 6가 134-1	안병승	
7					279 ~ 267	"	16	화곡동 358-12	이승준	
8					279 ~ 267	"	46	수유동 산 1	유운길외6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 대상)			소 용 자			관 제 인
		지 번	자 목	지 칙	지 번	자 목	지 칙	주 소	소	성 명	
9		279-266	임	43	수율동 산 1					윤 윤 철 회 6	
10		279-265	임	32							
11	우이동	72-111	임	401	동소문동 1 가 126			김 근 창			
12		72-119	임	23	회현동 46			김 흥 조			
13		72-118	임	21	김제군 축산면 축산리 31			조 성 훈			
14	우이동	72-117	임	20	신당동 산 1			박 중 국			
15		72-116	임	20	우이동 72-34			박 중 대			
16		72-115	임	21	중곡동 477			안 병 낙			
17		72-114	임	20	수율동 248-7			최 순 백			
18		72-113	임	38			273-18	강 명 구			
19		72-112	임	29-2	녹번동 137-37			이 준 용			
20	쌍문동	423-11	임	271	쌍문동 422			민 원 기			
21	우이동	산 59-8	임	108	예장동 6-6			박 용 해			
22	쌍문동	423-79	잠	10	소풍동 116-2			주식회사 서울은행			
23		423-78	임	4-1							
24		423-77	임	14-3							
25		423-70	임	18-6	우이동 95-3			김 순 영			
26		423-69	임	20-6							
27	쌍문동	423-76	임	14-2	성복동 177-30			김순영 회 3			
28		423-75	임	14-2							
29		423-74	임	23	마아동 510			제국상회 1			
30		423-73	임	13	쌍문동 423-17			서 대 원			
31		423-21	임	20							
32		423-22	임	37		423-16		이 외 영			
33		423-25	임	58	마장동 451-7			박 주 원			

10-20 계 454 호

시 보

1974.7.29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지			분할 후 표지 (수용 대상)			소 용 차			과 제 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자목	지적	주 소	성 명		
34	쌍문동				43-27	임	74	우이동 산 52	민원기		
35					424-4	•	216	태평로 1가 61-21	권경현		
36					424-18	•	63		•		
37					424-17	•	263	명륜동 1가 33	성상영		
38					424-2	•	211	가회동 31-13	안동선		
39					424-14	•	11		•		
40	우이동				70-4	전	1	예장동 6-6	박용래		
41					70-3	•	408		•		
42					100-13	•	349	우이동 101	김교례		
43					100-10	•	16	홍운동 71-68	김한술		
44					68-20	대	8	쌍문동 421	이팔수		
45					68-19	•	8	우이동 68-9	김찬수		
46					68-18	•	9		64		
47					68-17	•	9		68-5		
48					68-7	•	14		68-1		
49					68-16	•	11		68-1		
50					64-13	•	4	마장동 231	장영조		
51	쌍문동				503-20	•	16	쌍문동 503-1	박봉진		
52					502-2	•	8	가회동 31-13	안동선		
53					503-26	•	12	쌍문동 503-1	박봉진		
54					503-25	•	11		•		
55					503-17	•	48	복아현동 123-31	임형빈		
56					503-22	전	50		•		
57					503-21	대	182	정동동 175-6	문정숙		
58					503-24	•	141	우이동 45-1	정영배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지			분할 후 표지 (수용 대상)			소 층 자			부 록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층	형	
59	쌍문동				503-23	대	91	홍운동 5-36	정	민	숙
60					507-20	전	113	쌍문동 507-4	이	학	진
61					507-19	대	35	"	"	"	"
62					507-18	전	32	"	"	"	"
63					507-17	대	222	태평로 1가 61-21	김	순	자
64					507-16	전	119	쌍문동 507-1	박	희	웅
65					507-25	"	4-6	우이동 64	권	역	수
66	쌍문동				507-24	"	1	쌍문동 507-10	박	경	용
67					507-23	"	11	"	박	문	국
68					507-22	"	62	효자동 129	하	하	수
69					507-21	대	24	"	"	"	"
70					508-26	"	33	봉아현동 156	박	철	현
71					508-4	암	163	태평로 1가 61-31	권	순	자
72					508-3	"	151	회현동 1가 300-27	김	"	"
73					509-6	"	31	"	"	"	"
74					509-5	대	14	쌍문동 509	제단	법	인
75	우이동				49-6	"	1	우이동 49	송죽학원	이	연
76					44-3	"	144	" 44-1	이	철	봉
77					44-1	"	112	" "	"	"	"
78	쌍문동				509-4	"	6	원남동 73-4	김	동	진
79					510-2	"	53	쌍문동 510	정	국	경
80					512-6	"	8	미아동 산 111	진	희	영
81					512-5	잠	4	아천동 347-16	정	희	학
82	우이동				49-2	대	118	쌍문동 510	정	희	경
83					40-3	잠	83	미아동 산 111	방	희	설

40-22 제454호

시 보

1974.7.29

순위	소재지	분할점 표시			분할우표시 (수용대상)			소 우 자		판 제 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84	우이동				40-4	장	66	동천동 3가 243	방 일 선	
85					36-2	전	5	우이동 36-1	안분감이	
86					39-5	◦	256	동소문동 6가 3	김 영 곤	
87					8-13	대	155	관월동 45-1	주식회사 상화교통	
88					6-4	◦	270	당진리동 58-34	이홍준	
89					11-2	◦	21		◦	
90					5-10	전	670	우이동 5	최 한 응	
91					5-9	대	114	세종로 132	◦	
92	우이동				5-8	대	146		◦	
93					4-2	임	11	청운동 52-8	금강홍업 08	
94					16-2	전	60	이문동 344-5	백 남 춘	
95					44-10	대	5	하월곡동 90-1552	김 상 현	
96					44-9	대	6	수유동 279-5	이 재 복	
97					44-8	전	13	동소문동 7가 32	유 인 섭	
98					44-7	전	23	우이동 45	정 충 환	
99					41-15	대	6	◦	한 수 천	
100					41-14	◦	9	◦	정 산수천 회 11년	
101					41-13	◦	35		◦	
102					32-1	◦	8	◦	차 회 성 1 현	
103					35-2	◦	26	쌍문동 298	이 예 수	
104					40-2	전	24-6	우이동 17	안분감이	
105	우이동				36-5	◦	23	우이동 36-3	송 준 호	
106					36-4	대	21	쌍문동 355	문 복 선	
107					39-6	◦	70	동소문동 6가 3	김 영 곤	
108					38-3	전	15	우이동 10	김 륙 산	

순위	소재자	분할전 표지			분할후 표지 (수용대상)			소 용 자			분 재 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109					8 - 13	대	18	우이동	53	윤광선	
110					8 - 12	•	19	우이동	3	차도준	
111					7 - 4	•	19	우이동	8 - 7	김복수	
112					6 - 5	•	21	미아동	35 - 13	최봉숙	
113					10 - 11	•	4	당주동	106	김자명	
114					12 - 3	•	23	우이동	5	최한우	
115					5 - 7	•	20		•	•	
116					13 - 2	•	11		•	•	
117					5 - 6	•	43		•	•	
118	우이동				15 - 5	•	28	우이동	15-1	박선준	
119					15 - 4	•	13		•	원석상	
120					17 - 2	•	7	청운동	52 - 8	금강홍업	
121					16 - 3	•	176	노고산동	106-69	김병수	
122					16 - 8	•	94	하왕십리동	973-9	김향근	
123					16 - 9	•	18	우이동	16 - 6	양순자	
124					4 - 19	임	22	율지로2가	199	메트로호텔	
125					4 - 17	•	58		•	•	
126					4 - 16	•	36	우이동	4	김성학	
127					4 - 21	대	37		•	•	
128					3 - 3	•	24	이문동	344-5	백남준	
129					3 - 2	전	54	창신동	197	백낙승	
130					4 - 7	•	63	율지로2가	199	메트로호텔	
131	우이동				4 - 9	임	44		•	•	
132					4 - 15	•	15	우이동	4	양병국	
133					4 - 10	•	233		•	•	

40-24 제 454호

시 보

1974.7.29

순번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내장)			소유자			판 제 인
		지 번	자 목	지 척	지 번	자 목	지 척	주 소	소	성 명	
134	우이동				4-31	91	704	율지로2가	199	베트로호텔	
135					16- 1	대	70	우이동	4	원종석	
136					12- 1	•	07	•	5	최한웅	
137	수유동				279- 239	•	45	수유동	산 1	황광수	
138					279- 23	•	3	•	•	•	
139					279- 7	•	11	수유동	279-7	정원준	
140					279- 11	•	9	•	279-11	이회경	
141					279- 12	•	9	•	279-12	임호동	
142					279- 13	•	9	•	579-39	김성열	
143					279- 14	•	16	•	279-14	송삼호	
144					279- 15	•	19	•	279-15	이진영	
145					279- 240	•	135	•	279-14	강금복	
146					279- 241	•	66	•	279-69	한사복	
147					279- 242	•	57	•	279-49	유원천	
148					279- 243	•	44	•	279-48	신순중	
149					279- 244	•	34	•	산 1	용세홍	
150					279- 245	•	28	•	•	채원용	
151					279- 246	•	26	•	279-130	김화규	
152					279- 247	•	25	•	산 1	아창호외6	
153					279- 248	•	28	•	279-79	선우웅	
154					279- 249	•	9	•	279-115	이윤홍	
155					279- 73	•	26	•	산 1	유운길외6	
156					279- 119	•	12	•	279-119	이기영	
157					279- 120	•	3	•	279-73	김필수	
158					279- 121	•	16	•	279-121	•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 대장)			소 용 자			분 류
		기 번	지 목	자 칙	기 번	지 목	자 칙	주 소	소	성 명	
159	수유동				279-70	대	40	수유동	279-70	연정자	
160					279-211	~	10	~	279-211	김필수	
161					279-250	~	38	~	~	~	
162					279-251	~	5	~	279-71	홍순례	
163					279-252	~	39	~	~	~	
164					279-253	~	63	~	279-38	이명익	
165					279-254	~	30	인회동	18.101	조희구장수	
166					279-255	~	46	~	~	~	
167					279-256	~	2	전남보성군보성읍	120	임장택	
168					279-85	~	50	인회동	18.101	조희구장수	
169					279-257	~	18	~	~	~	
170					279-258	~	62	~	~	~	
171					279-10	~	1	상수동	281-2	김선애	
172					279-31	~	672	예평동	70-18	이일희화인	
173					272-10	~	0.3	안암동	85-11	김일진이경주	
174					272-11	~	40	수유동	273-12	한상간	
175					273-28	~	10	~	~	~	
176					273-30	~	16	~	~	국민은행	
177					272-12	~	150	~	~	~	
178					268-8	답	426	대조동	79-8	유재용박복희	
179					268-5	대	8	신문로2가1-124	~	~	
180					268-4	~	24	수유동	268-3	교체영	
181					268-7	~	24	~	268-4	현정우	
182					267-2	~	253	신문로2가108-5	268-1	방성준백길	
183					279-29	~	2	수유동	상1	이석우	
										이창호의 6	

40-26 제454호

자 보

1974.7.29

No	소재지	전용구조	총면적	수용대상	소유자		비고
					평	주소	
1	수유동 268-4	세법부록조세법와중	25.46	3.5	수유동 268-4	현영숙	
2	“ 268-3	“	11.74	7.6	“ 268-3	교재영	
3	“ 279-4 279-12	“	20.05	20.05	“ 273-12	한상갑	
4	“ 279-115	연화조스파보증	6.26	4	“ 279-115	이운태	
5	“ 279-70	세법부록조세법와중	14.93	14.93	“ 279-70	연영철	
6	“ 279-15	“ 세법와중	6.45	6.45	“ 279-15	이진영	
7	“ 279-13	“	5	5	576-39	김성열	
8	“ 279-11	“	5	5	동두천읍생연리 59	김동수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1호

환지 예정지 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신림추가·시흥 및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  
에 대한 환지예정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47조  
제55조·제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의  
한규정제 25조·제 11항제 3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다.

2. 환지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 및 관할  
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것이나 미수령 토지소유자의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을친다

1974. 7. 20

서울특별시장

## 공 람 개 요

1. 사업명: 신림·신림추가·시흥 및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일부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발산동·동촌  
동·독산동 일부지역

3. 변경필지수: 10 필지

4. 변경조서 및 도면:

별첨(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부변경공고

- 서울특별시 사용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계획(도로계획) 일부를 별  
첨과 같이 변경인가하는 동시 환지  
예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3조, 제 34조, 제 56조,  
제 57조 및 행정관할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항  
제 5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한다.

-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는 날  
로부터 사용수익을 하지 한다.

-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  
정리 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사업계획 및 환지예정지 변경도  
서(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1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1974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3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일자변경시행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19호(74. 1. 30)  
로 공고된 74년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시행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코자 공고한다.

1974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시험 구분

면허종별 및 구분	시 험 일 자		시험장 소
	변 경 전	변 경 후	
1 중대형면허	4, 10월의 첫째화요일	9, 12 목요일 11, 14 "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장
1 중보통면허	3, 9월의 첫째화요일	7, 3 화요일 11, 5 "	

면허증별 및 구분	시	월	일	일자	시험장소		
	면	경	전	면	경	후	
2종보통면허	4.	10	월의 세째화요일	9, 25	수요일		
				11, 20	"		
1종특수면허	3.	9	월의 네째목요일	10, 10	수요일		
				12, 11	"		
2종소형면허	3.	9	월의 둘째목요일	10, 17	목요일		
				12, 19	"		
원동기면허	매	주	금	요	일	매	주금요일

## 2. 기타사항

면허시험에 대한 상세한 것은 54-6092) 및 각경찰서 교통계에 서울특별시경찰국 면허제(54-671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4 호

성북구호적, 병사용구청장  
직인개각공고

성북구 호적, 병사용 구청장직인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각하였기 동조  
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4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개각사용일자 ; 1974.7.20.
2. 직인의 인명 ; 성북구청장인(호적, 병사용)
3. 인의 형상 ; 정사각형, 한글전서체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6 호

준용하천(단축및삭제)변경

하천법 제 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9 조 규정에 위하여 당시 준용하천중  
아래 하천에 대하여 하천구간을 단축  
또는 삭제하였기 공고합니다. 관계 도  
면은 전설국 하수과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열람합니다.

1974  
서울특별시장 양태식

## 준용하천 단축 및 삭제내역

경 칭				종 칭	시 절		구 분	비 고
본류	1지선	2지선	3지선		당 초	변 경		
한강	안양천	개화천	오류천	영동포 개봉동 개화천 합류점	영동포구 궁동 47 개봉동 105, 264	영동포 오류동 80	준 농	단 축
	중랑천	청계천	신당천	성동구 신당동 청계천 합류점	성동구 신당동 360-3 교량	성동구 신당동	삭 제	삭 제
		중곡천		성동구 중곡동 중랑천 합류점	성동구 중곡동 9번지	성동구 중곡동	삭 제	
		방학천		도봉구 방학동 중랑천 합류점	도봉구 방학동 396, 587	도봉구 방학동 41-7 (철교암)		단 축
	안양천	도림천	예방천	영동포 신길동 도림천 합류점	영동포 상도동 34, 211 288, 722	영동포 상도동 34, 211 722, 298-1		

## ◎전 설 부 공 고 제 73 호

전설부공고 제 8호 (68.1.23) 및  
제 96호 (70.9.3)로 사업시행인가된  
바 있는 경포 및 신길지구 토지구

의 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토지구획 정  
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변경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4년 7월 9일

전 설 부 장 관

40-30 제 454 호

시 보

1974.7.29

## 1. 변경사항

## 가. 김포지구 가로망 변경조서

로선명	폭원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면적	연 장	면적	
광로2류 16호선	m 40	m 5,802.10	m <sup>2</sup> 230,142.27	m 4,062.10	m <sup>2</sup> 161,542.27	연장 1,740m 축소(제적)

## 나. 신림지구 시장 변경조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시장용지	381 부터	m <sup>2</sup> 3,305.80	폐 지	폐 지	일반택지로변경

2. 기타 ;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 한다 ( 관계도서 생략 ).

## ◎마포구 청 공고제 20호

토지수용법시 행령 제 17 조 2항에 의거 학교시설용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년 7월 15일

마포구청장

가.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학교 ( 서울망원국민학교 )

## 다. 기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6-1 대 560.3 평

426-5 대 603.2 평

427-2 대 130 평

428-8 대 663.9 평

제 4필지 1,957.4 평

라. 열람기간 ; 1974.7.15~1974.

7.28(14일간)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기간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 19 조에 의거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주무부서 성동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경재구
바. 본 공고의 통지를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은자의 주소, 거소 등 불명으로 수취되지 않을 때는 본 공고로 송달한 것으로 여신합니다.	성동구 주무부서 용산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동부경찰청 주무부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이화기 송재경
사명	서대문구 주무부서 동부경찰청 주무부서 종로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주무부서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홍성완 이용환
◎ 1974.6.27.	영등포구 주무부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주무부서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전설국(시) 한강건설사업소장 겸무를 명함.	박재명 고연상 김충복
서울특별시 농림기정 허형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한강건설사업소장 겸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장 겸무를 명함. 시설부기관에 일함.	정현영
1974.6.27.	1호봉을 급함.	
대통령	1호봉을 급함.	
◎ 1974.7.6	서울특별시전설국장에 보함.	
의약과 지방의무 (의무제장) 기관서보 지방의무기과에 일함.	김상대	
보전사회 국의약과의무제장에 보함.		
◎ 1974.7.11.		

40-32 제 454 호

시 보

1974.7.29

제 15국 장 시설기감 이 총 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4년 7월 11일  
대 통령

(◎) 1974.7.12

도시가스사업 지방행정  
소 과장과장 사무관 이 용 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4.7.15

서대문구 주 방 행 정  
지 방 행 정 사무관 이 규 환  
지 방 행 정 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한강건설사업소관리과사무계장에 보함.

한강 건설 지방행정  
사 업 소 주 방 행 정 쇠 영 대  
지 방 행 정 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시립교향악단 주 방 행 정 윤 순 화  
지 방 행 정 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수 원 과 주 방 행 정 황 호 완  
지 방 행 정 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과장과장에 보함.

건설행정과 지방행정  
주 사 이 운 복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녹지국조경과 지방농림  
기 과 이 회 봉

대통령경호실 과장근무

(74.7.15~75.6.30)

북부녹지사 지방농림  
업소(소장) 기 과 이 회 봉

녹지국조경과 근무를 명함.

(◎) 1974.7.16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보서보 정 청 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정 대 복

소년기술원장에 보함.

소년기술원장 박 영 관  
지방행정  
사무관

여자기술원장에 보함.

여자기술원장	지방행정 사무관	김 용 마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이 운 영
성동부녀복지관장에 보합.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부녀 복지관장	지방행정 사무관	박 국 자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전재희
동대문부녀복지관장에 보합.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장 일 현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신동휘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b>◎ 1974. 7. 18</b>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재구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권봉수
보건예방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종근	보건예방과	지방보건 기사보	서인석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고동우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손기순
동대문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이형근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신현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안창원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손일준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지병국
동대문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김풍현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조성현	동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전재봉
동대문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김지한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신경태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최우근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김정구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강찬규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40-34 제454호

시

보 1974.7.29.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용산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김근환	서대문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이금호 중로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용산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한상훈	성북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양재상 중로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동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이영범	서대문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이명숙 중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영등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이현홍	서대문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장재원 동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보건기자보 영등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강두진	보건예방과 치방보건기자 이금남 성동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기자보 (임상병리)	한충수	환경과 치방보건기자 허병환 성동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동부병원(임상병리) 지방보건기자보	문탁빈	용산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송만수 성북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김영재 성북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기자보 영등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김광복	마포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김성한 도봉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자보 (임상병리)	최수점	용산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박상온 서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자보 (임상병리)	안병익	성동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한경우 영등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아동병원(임상병리) 지방보건기원보		성동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송정호 마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치방보건기자	박종오 김형탁	
보건예방과 균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최정상	성동구도선동 지방행정 서기보 박창우
용산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박철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4.10
마포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자 발령제 319호, 경제처분(감봉 6월)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3월에 처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윤정로	◎ 1974. 7. 19
서대문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가 축 지방행정 위생시설소 주사보 윤인홍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주경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의
용산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이종국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성동구 지방행정 주사보 강철수
관악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박말봉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의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규정에 의하여 과면에 처함.
관경과 균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박찬재 성동구 지방행정 성동구보건소 균무를 명함.
양서울장소 지방기자 기원보서보	정구갑	서기 실습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본인 출두치 않아 74.7.1자 신규임용발령(인사 211-)을 동 일자로 취소함.		중구 지방행정 서기 정경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양서울장소 지방행정 전설과 주사보 이성훈		동대문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 정수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5.17 자 발령제 483호 경제처분(감봉 6월)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		동대문구 균무를 명함.

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조종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수도 지방행정 안영승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은평구장소 근무를 명함. 중구수도 지방행정 조용복 수도사업소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채에 처함. 관악구수도 지방행정 조진상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채에 처함. 연로시험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수도 지방행정 김영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성동구수도 지방행정 박관영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영등포구수도 지방행정 우재봉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종로구수도 지방행정 정용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은평구장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 지방행정 이무웅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임웅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박향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은평구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김대경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 지방행정 김육삼 수도사업소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	---

성 봉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김 창 회	동 대 문구 지방토목 기 원	남 광 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제 2 과 근무를 명함.	성 봉 구 지방건축 운영술장소 기원보	나 영 찬
도봉구 근무를 명함.	운영술장소 근무를 명함.	운영술장소 지방건축 기 원	나 병 일
영 둘 모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김 성 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기 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제 1 과 주 사보	제 1 과 지방행정 파견 ( 74.7.20 - 74.10.19 ) 근무를 명함.	추 진 갈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예자기술원 주 사보	예자기술원 지방행정 기 원	박 기 수
◎ 1974. 7. 20.	조종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임 수 용
천호술장소 지방토목 기 사	이 부 방	성동구 지방행정 기 원	강 우 자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기 원	유 경 숙
도봉 구 지방토목 기 사	김 창 배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우 길 하
천호술장소 근무를 명함.	여자기술원 주 사보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기 원	부녀사업관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기 원	성 북 구 지방행정 기 원	유 성 열
구회정리 2 과 지방토목 기 사보	박 회 전	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	부녀사업관 지방행정 기 원
도시체육과 근무를 명함.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부녀사업관 서 기	일 금 자
개 랑 2 과 지방토목 기 사보	고 안 용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기 원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교 육 원 장	교 육 원 장 부이사관	홍 석 철
서 대 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 원	유 회 상	이사관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40-38 제 454 호

시 보

1974.7.29

환경국장 부이사관 서기석 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주도사업소 기원보 장진호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1974년 7월 20일 대 통령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주도사업소 기원보 김상균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1974. 7. 23 가축위생 지방수의 시험소원보 최성목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보광동 지방토목 수원지사무소 기사보 김준일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주도사업소 기원 김영수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주도사업소 기사보 이상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가축위생 지방수의사 문현칠 시험소원보 박서룡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농정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보 장관진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적기사보 장관진 중구파견 (74. 8. 30 까지)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 장사현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1974. 7. 24 서대문구(부지 지방농립 과장직무대리) 기사 최종문 북부녹지 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 1974. 7. 25	경 원 도 지방간호 양구군보건소 기원보 서울특별시 건립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입함. 5호봉을 금함.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 유 지 이 글 백 하 건 철 박 장 근 이 인 수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제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중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 서기관 한 백 수도국수도행정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내무국 서기관 배 문환 중무과장 서기관 손 월수 시민회관장 직무대리겸무를 명함. 감사담당관 서기관 손 월수 감사판자부대리를 명함. 보건사회국 서기관 이 상 역 보건행정과장에 보함. 교육원교수부 서기관 박 수복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장에 보함.	최 해 영 정 만 교 정 흥 근 한 백
◎ 1974. 7. 26	마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최 재근	시민회관장 직무대리겸무를 명함.	
◎ 1974. 8. 1	경기도성남시 지방건축 도시과 기원보 서울특별시 건립을 명함. 지방건축기원보에 입함. 4호봉을 금함.	정 철 수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장에 보함. 교육원교수부 서기관 박 수복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장에 보함.	

40-40 제 454-2

시

1974.7.29.

강서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국 손동운	강서관 겸무를 면임,
강서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수도국수도 부이사관 김상진 행정담당관
내부국장 이사관 김찬희	전국전선행정담당관에 보함.

서울특별시장